

Muan Web Contents

2023년 11월 30일 19시 21분



목차

목차	2
폐수배출업소관리	3
폐수배출업소관리 목적	3
폐수배출업소 점검	3
정기점검	3
사업장 등급별 점검횟수	3
수시점검	3
폐수 자가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·점검 내용	4
폐수 위탁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·점검 내용	4
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지도·점검내용	4
기타수질오염원이란	4
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	4
정기점검	4

폐수배출업소관리선택됨

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

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

자동차배출가스단속



폐수배출업소관리 목적

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,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사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,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의 기술지도로 시설 적정관리를 유도함과 동시에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맑은물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.

폐수배출업소 점검

정기점검

등급	최근 2년 이내 지도 · 점검결과
우수관리	지도 · 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정상가동 사업장
일반관리	우수관리 및 중점관리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
중점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오염물질 부적정 처리 및 행정명령 불이행 등을 1회 이상 위반 배출허용기준,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2회 이상 초과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개선명령, 개선권고, 조업중지명령, 사용중지명령 등 불이행 기타 민원유발 등 관할기관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

사업장 등급별 점검횟수

등급	사업장 규모별 점검 횟수				
	1종	2종	3종	4종	5종
우수관리	1	1/2	1/2	1/2	1/2
일반관리	3	2	2	1	1
중점관리	4	4	3	3	3

- 신규허가(신고)사업장의 등급은 녹색등급으로 구분한다
- 사업장 등급은 과거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마다 재조정한다. 정기지도 · 점검 횟수

수시점검

갈수기, 하절기, 연휴기간, 취약시간대(야간, 공휴일 등)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,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요청, 환경오염피해 진정 민원 발생이 있을 때 수시점검을 실시

폐수 자가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 · 점검 내용

- 배출시설설치허가(신고)사항 임의증설, 신설여부
-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
- 비밀배출구 설치여부
- 방지시설 고장방치(기기고장 등) 여부
- 최종 방류수 수질상태(시료채취 및 수질조사 실시)
- 처리약품의 정상적 투입여부
- 환경관리인 근무상태
- 행정명령 이행사항 등

폐수 위탁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 · 점검 내용

- 적정용량의 폐수저장시설 설치 여부
- 위탁처리업소 및 위탁폐수의 관리 적정여부
- 성상별 폐수보관 적정여부 등

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지도 · 점검내용

기타수질오염원이란

폐수배출시설 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수산물양식시설, 골프장, 운수장비 정비 또는 사진처리시설(X-Ray시설포함) 등을 말함

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

-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, 관리신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전까지 기타수질오염원설치, 관리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
- 원료,사료,약품,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되는 물질의 사용량, 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예측서 1부
-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, 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

정기점검

- 점검횟수 : 연1회(중점관리사업장은 연 2회)
- 점검내용

- 정비업소의 지붕시설 및 바닥크리트 설치
- 침전 및 유수분리시설 적정설치 및 운영여부
- 폐유, 폐부동액 등 보관상태 및 누출여부
- 경정비업소의 폐유 등, 지정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

MUAN

Web Contents

 무안군